

● 제286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586)**

**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(587)**

검 토 보 고 서

2019. 4. 1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586, 587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586)

- (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(2) 제 출 일 : 2019. 3. 29.
- (3) 회 부 일 : 2018. 4. 3.

나.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587)

- (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(2) 제 출 일 : 2019. 3. 29.
- (3) 회 부 일 : 2018. 4. 3.

2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586)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.

나.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587)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586)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19조제2항제3호)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.

나.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587)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586)

- (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(2) 예산조치: 협의완료
- (3) 기 타
 - (가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(나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 - (다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나.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587)

- (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(2) 예산조치: 협의완료
- (3) 기 타
 - (가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나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다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조례안의 개요

- 의안번호 586번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의안번호 587번 「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¹⁾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현재 정책 기대효과에 비해 저조한 이용률로 정책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 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¹⁾, 지방자치단체는 공

1)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

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민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일정비율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감면의 대상과 내용은 각각 시립여성발전센터 5개소의 이용료 10%이내,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30%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.

구분	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	「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감면 대상 시설	시립여성발전센터 5개소	서울상상나라
감면 내용	이용료의 10%이내	입장료의 30%이내

- 감면 기준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설별 수요 탄력성 및 이용요금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이용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아

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높거나 이용료가 낮아 체감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% 내·외 할인을 적용하고, 시설 이용수요가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낮거나 이용요금 이 높아 할인 규모가 과도한 경우에는 5% 내·외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음.

〈제로페이 감면 적용안〉

이용요금 수요탄력성	수요탄력성 낮아 이용 확장성 낮은 시설	수요탄력성 높아 이용 확장성 높은 시설
이용요금이 높은 시설	5% 이하	10% 이하
이용요금이 낮은 시설	10% 이하	30% 이하

*5% 이하 : 이용요금은 높는데 확장성이 낮은 시설, 예) 대관료 등

*10% 이하 : 이용요금도 낮고 확장성도 낮은 시설, 1회 이용요금은 높으나 확장성이 높은 시설, 예) 주차요금, 사용료 등

*30% 이하 : 이용요금이 낮고 확장성도 높은 시설, 예) 입장료 등

- 현재 법이나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대상자, 경로자, 영유아, 70세 이상 부모부양자, 자원봉사자, 다자녀·다둥이 가정, 모범납세자, 병역명문가 등에게 공영주차장이나, 체육·문화시설 및 시립 장례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, 기존의 감면 대상은 취약계층이거나 그 공로를 인정하여 혜택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,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 조례안에 따른 감면은 그 당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.
- 한편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로페

이 결제에 따른 이용료나 입장료 감면 시, 여성발전센터는 민간에서 경쟁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수영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, 상상나라는 기존의 연회비 이용고객에게는 별다른 편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.

□ 한시제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성

-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감면조치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될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해보아도 최대 6개월내외의 기간 동안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.
- 개정안을 통한 감면이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비를 통한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한정 지속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를 범위로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례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제도는 통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비교적 단기로 판단되는 6개월이라는 감면 시행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하려는 것으로,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
- 다만 감면의 사유가 타 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 사유와는 다소 이질적이고, 6개월이라는 한시적 시행으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 문제,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설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붙임 : 시설별 이용료 및 입장료 등 부과기준

가. [별표 8] <개정 2017. 9. 21.>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 (제18조 제1항 제3호 관련)

구 분		단 위	기준금액	부 과 기 준
직업교육		1명 1개월	15,000원~ 100,000원	시장이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총 수강료 수입이 해당과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. 1. 직업교육: 100,000원 2. 생활문화: 50,000원
생활문화		1명 1개월	15,000원~ 50,000원	
보육실 이용료		1명 1개월	5,000원~ 10,000원	○ 교육수강시간에 한정함
수영장	수강료	1명 1개월	40,000원~ 80,000원	○ 월 20시간 이내
	자유이용료	1명 1회	2,500원~ 3,000원	
헬스		1명 1개월	40,000원~ 80,000원	
에어로빅 (요가)		1명 1개월	40,000원~ 60,000원	
강당		1시간	10,000원~ 30,000원	○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,000원 ○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○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교육실 및 회의실		1시간	5,000원~ 20,000원	○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○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○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세미나실		1시간	10,000원~ 30,000원	
시청각실		1시간	20,000원~ 40,000원	
창업보육 지원시설	창업보육 실	m ² 당/1개월	1,000원~ 5,000원	○ 보증금 1,000,000원 별도 ○ 관리비 별도
	창업부스	부스당/ 1개월	10,000원~ 30,000원	○ 보증금 500,000원 별도

나. [별표 1] 서울상상나라 연회비 및 입장료등(제5조제3항 관련)

1. 입장료

구 분		입장요금	비 고
개인	만 3세(36개월) 미만	무료	관련 증명서 지참
	만 3세(36개월) 이상	4,000원	
단체	만 3세(36개월) 이상	3,000원	20명 이상 (인솔성인: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)
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.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 한 성인 1명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5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6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. 어르신(만 65세 이상) 8. 서울상상나라 회원(연회비 납부자에 한함)		무료	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

2. 수강료 및 관람료

구 분	개 인	단 체 (20명 이상)	비 고
수강료	30,000원 이하	-	○1회 기준 ○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, 재료비 포함 ※ 무료강좌일 경우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수납가능
관람료	30,000원 이하	개인요금의 80% 이하	○1회 기준

3. 연회비

구 성	금 액	비 고
2인 가족	30,000원	
3인 가족	40,000원	
4인 가족	50,000원	1인 추가시마다 10,000원 추가